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8
------	-----

제출년월일 : 1998. 8. 18.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명칭 변경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 분장사무 조정
 -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통합됨으로서 사무분장 조정

3. 본문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등 농업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제2조(위치) 농업기술센터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농업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지 이용관리,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사항
2.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 생활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지원
9. 농업 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IPM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2.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3.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조직등)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②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47조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③고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동조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삭제한다.

④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⑤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⑥고성군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